

울산지방법원 2019. 11. 22 선고 2019가단669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19. 11. 1.

판결 선고2019. 11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E 답 357m²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3. 4. 27. 접수 제8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3. 4. 27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 즉,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.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1993. 4. 26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3. 4. 26.경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2003. 4. 27.경에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.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 요지 및 그 취지

원고는 남편인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. 다만 위 토지에 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고들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.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이므로,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,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우선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,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, 피고들이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·입증이 없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(대법원 1999. 3. 18.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).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, 피고들의 이행청구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, 을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이 1998. 6. 18.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'청구'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, 달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

증거도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장지혜